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

이사회회의록

- I. 개최 일시 : 2026년 6월 11일(목) 오후 15:00
- II. 회의소집통보일 : 2026년 6월 2일(화) 우편발송, 다자간메신저(카카오톡 단톡방)로 공지
2026년 6월 9일(화) pdf파일로 회의자료 발송
- III. 개최 장소 : 인정재단 법인회의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71, 본관 2층)
- IV. 참석자 : 대표이사 - 홍
이 사 - 오 ; 강 , 박 ; 강 , 권 ; 함
감 사 - 감 , 조 ; 사회자-법인사무처장 (시설별 제안설명 시설장 참석)

□ 개회 및 성원보고

- 의장(대표이사) 홍 :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 2026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시작을 알리고 사회자에게 성원 보고를 요청하다.
- 사회자 : 인정재단 재적이사 8명 중 7명 출석, 감사 2명 중 전원 출석으로 인정재단 정관 제6조, 제26조(의결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해당항에 의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 의장 홍 : 성원 보고를 받고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 2026년 제2차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 국민의례

- 사회자 : 식순에 의거 국민의례를 진행하다.

□ 대표이사 인사

- 의장(대표이사) 홍 | : 2026년 6월 상반기를 보내며 금일 인정재단 설립 24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음악회 행사를 신행하게 되었고, 금일 행사에 앞서 재단 임원분들과 의미있는 시간을 갖고자 시간 차를 두어 이사회 개최를 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바쁘신 와중에도 먼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석해 주신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오늘 이사회는 **정관변경, 2026년도 2차추경, 시설장 임면, 장기차입, 이사사임 및 선임 등 승인 사항**의 안건이며, 또한 검단지역자활센터 지정 보고 등 재단 운영의 중요한 안건인 만큼, 임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토와 원활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지혜로운 논의들이 재단의 내실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회의가 끝난 후 인정재단 설립 24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음악회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인사로 대신하다.

□ 회순 채택

○ 의장 홍 : 회순채택으로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 2026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보고사항으로 검단지역자활센터 수탁운영 지정 보고와 부의 안건을 상정하다.

- 제 1호 :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 제 2호 : 시설의 장 임면 승인의 건(정 ; 조)
- 제 3호 : 법인 및 산하시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제 4호 : 장기 차입 승인의 건
- 제 5호 : 이사 사임 및 선임의 건 으로 진행하게 됨을 설명하고, 원안대로 진행해도 되는

지 추가할 안건이 있는지 이의 여부를 묻다

○ 출석 임원 : 이의 없이 전원 동의와 재정을 하다

○ 의장 홍 : 동의와 재정으로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회순을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선포하다.

□ 전차회의록 처리

○ 의장 홍 | : 2026년 제1차 이사회(2026.2.11) 전차회의록 처리를 상정하고 사회자에게 전차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 주길 요청하다. 사회자 보고 후 임원 여러분께 사회자가 낭독한 전차회의록에 이의 여부를 묻다.

○ 출석 임원 : 전원 이의 없다고 하다.

○ 의장 홍 : 출석 임원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 승인함을 선포하다.

□ 보고

- 제1호 보고 : 검단지역자활센터 수탁 운영 지정 보고

○ 의장 홍 : 검단지역자활센터 수탁 운영 지정 보고 과정을 사회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사회자 : 서구 공고 제2026-279호(2026.2.3.자) 검단지역자활센터 신규 지정 신청자 모집 공고에 의거 운영주최 법인 인정재단이 신청 및 최종 선정, 보건복지부로 부터 수탁 운영 지정 통보 받았음을 보고하다

-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27조에 의거
- 경과 보고
 - (2026.02.0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279호(2026.2.3) 검단지역자활센터 신규 지정 신청자 모집 공고
 - (2026.02.11.)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검단지역자활센터 신규 지정 신청에 인정재단 참여 의결
 - (2026.02.20.) 검단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 서류 제출
 - (2026.03.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검단지역자활센터 신규 지정을 위한 운영법인(단체) 선정심사- 법인(단체)발표자 제안설명
 - (2026.03.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검단지역자활센터 신규 지정 신청 법인[단체] 선정 결과 공고

- (2026.04.01.) [검단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 법인]으로 선정되어
검단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을 위한 관련 최종 자료 제출
- (2026.06.) 보건복지부로 부터 [검단지역자활센터 지정] 공문 접수 보고하다

- 의장 홍' :검단지역자활센터 수탁 운영 지정 보고를 받고 출석임원의 의견을 묻다.
- 이사 강' :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7월 1일자 서구에서 검단구 분구로 인해 인정재단은 검단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통해 폭넓은 복지실천으로 복지대상자 확대 및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다. 또한 법인은 검단구에서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구축이 가능하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생산적 복지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다.
- 의장 홍 :검단지역자활센터 수탁 운영 지정 보고를 받고 통과 가부를 묻다.
- 출석 임원 : 전원 이의 없으며 전원 찬성한다.
- 의장 홍' : 출석 임원 전원 찬성에 따라 검단지역자활센터 수탁 운영 지정 보고를 원안대로 승인함을 선포한다.

□ 본안심의

- 제 1호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의장 홍 : 제1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안건 상정하고 사회자에게 제안 설명 요청하다.
- 사회자 : 인정재단 「정관」제26조 제1항, 제8항,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 변경(안)을 이사회에서 제안 설명하다.
 - ▶ 「정관」 변경 사유 및 내용
 - 1. 「정관」 제1조 (목적) (전면 변경)
 -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의거
 - 변경 :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촉진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확립 및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2항 제7호 검단지역자활센터 수탁운영 설치 (신설)
 -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7조(지역자활센터 지정)에 의거
 - 변경 : 7. 검단지역자활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독정로 125번길 12 동관 3층
 - 3. 「정관」 제4조 (사업의 종류) 제3항 사업추가 신설 및 4항과 5항은 항 이동 (일부 변경)
 -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7조(지역자활센터 지정)에 의거
 - 변경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의 지역자활센터 수탁운영사업 (신설) / 4. 수익사업 (3→4로 항 이동) / 5.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5로 항이동)
- 의장 홍 : 제1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은 검단지역자활센터 수탁 운영 지정 승인으로 인하여 정관 변경을 해야 센터 설치 신고가 가능한 필수 행정 사항으로 명문화하여 정관 변경한 사항이므로 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받는 것에 동의를 구하다.

- 이사 오 : 원안에 동의하다.
- 이사 강 : 재청하다.
- 의장 홍' : 본 안에 대하여 통과 가부를 묻다.
- 출석 임원 : 전원 찬성하다.
- 의장 홍' : 동의와 재청, 추가 의견 없이 전원 찬성으로 제1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을 선포하다.

-제2호 : 시설의장 임면 승인의 건

- 의장 홍' | : 제2호 의안 시설의장 임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안건 상정하고 사회자에서 제안 설명 요청하다.
- 사회자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인정재단「정관」제26조제7항에 의거 법인이 운영하는 산하시설 호인세상의 시설장과 검단지역자활센터 센터장(시설의 장) 임면(안)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제안 설명하다.

▶ 제안사유

1. 호인세상: 현 오 시설장이 2026.6.30.자 정년으로 후임 인사를 법인은 산하시설의 인사 발령 및 승진을 통하여 고역량(High-potential)인재의 적정 배치는 기관운영에 효율적,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2026.5.26.자) 법인인사위원회에서 성실, 근면, 기여도 검증 심사에 통과한 인정누리 의 정 재활행정부장(선인 직업훈련교사)을 신임 호인세상 시설장에 임면을 제안하다.
2. 검단지역자활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279호(2026.2.3) 검단지역자활센터 신규 지정 신청자 모집 공고에 참여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27조에 의거 검단지역자활센터 신규 지정 신청시 (2026.2.11.)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조 센터장 내정자를 최종적으로 신임 검단지역자활센터장(시설장)에 임면을 제안하다.

▶ 주요내용

- 인사발령일자: 2026년 7월 1일자
- 임용기간: (3년) 2026.7.1.~29.6.30이며 이후 법인「인사관리규정」제5조(임용의원칙)제2항에 의거 재임용 절차 진행함을 설명하다.

성명	정	조
생년월일	1984.	1976.
최종학력	나사렛대학교(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최종 근무처	인정재단 인정누리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경력	18년 6개월 경력	15년 8개월 경력
자격	사회복지사 2급, 직업재활상담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검증절차	(2026.5.26.) 법인인사위원회에서 인사 발령 및 승진 의결	(2026.2.11.)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센터장 내정자로 의결

- 의장 홍 : 제2호 의안 시설의장 임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받는 것에 동의를 구하다.
- 이사 강 : 원안 동의하다.
- 이사 권 : 재청하다.
- 출석 임원 : 전원 찬성하다
- 의장 홍 : 동의와 재청, 전원 찬성으로 제2호 의안 시설의장 임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을 선포하다.

- 제 3호 : 법인 및 산하시설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 홍 : 제3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시설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 안건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주문하고 법인 및 산하 시설 순으로 담당자는 정리 요약하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증감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다.
- 제안 설명 : 법인 및 산하 시설 순으로 세부 사항을 요약하여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증감 사유를 기 제시된 회의 자료에 의거 제안 설명 및 이사회 승인을 구하다.

***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구분	(1)차 추경 예산액	(2)차 추경 예산액	증감(▲▼)
총계	5,120,372,337	5,153,229,337	▲32,857,000
인정재단 일반회계	646,000,000	646,000,000	0
인정누리	2,941,000,000	2,935,700,000	▼5,300,000
호인세상	769,443,000	769,500,000	▲57,000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763,929,337	802,029,337	▲38,100,000

○ 의장 홍 : 제3호 의안 법인 및 산하시설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시설 담당의 제안 설명에 수고하였음을 표하고 임원여러분께 검토하신 본 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논할 사항 여부를 묻다. 본 안 제2차 추경(안)은 종사자 변동에 따른 증감액, 공익법인 결산공시관련 수수료 비용, 법인전출금 증액, 제세공과금 증액 등의 추경으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며, 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받는 것에 동의를 구하다.

- 이사 박 : 원안 동의하다.
- 이사 권 : 재청하다.
- 의장 홍 : 그 외 임원 여러분께 추가 설명 또는 의견 여부를 묻다.
- 출석 임원 : 전원 이의 없다고 하다.
- 의장 홍 : 동의와 재청,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본 안에 대하여 통과 가부를 묻다.
- 출석 임원 : 전원 찬성하다.
- 의장 홍 : 동의와 재청, 추가 의견 없이 전원 찬성으로 제3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시설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을 선포하다.

- 제 4호 : 장기 차입 승인의 건

- 의장 홍 : 제 4호 의안 장기 차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 안건 상정하고, 사회자에게 제안 설명 요청하다.
- 사회자 :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은 정관 제6조(자산의 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장기 차입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하다

▶ 장기차입 목적 및 용도 설명하다

1. 장기차입 목적: 정관 제31조(수익사업) 제1항 제1호(부동산 임대업)에 근거하여 임대업 활성화 시급
 - 자금 확보: 금융권으로 부터 장기 차입을 통해 증축 비용 조달, 증축 준공 및 후 임대를 통한 수익 구조 다변화 가능

- 법인 운영: 임대 수익을 법인 운영비 및 산하 시설 운영의 자양분으로 활용 및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를 통한 법인의 재정 자립도 향상 가능
 -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장애인 복지 증진 달성에 기여 가능.
2. 장기차입 용도:수익용 기본재산 토지(나대지/828㎡)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60.83㎡ -약 382평) 수익용 건물 증축

▶ 수지분석 및 상환계획 설명하다

1. 증축 공사 등 총액: 금일십구억원정 (₩1,900,000,000)
2. 자금 조달 계획
 - 차입금: 금일십오억원정 (₩1,500,000,000) (금융권/국민은행 청라지점)
 - 법인자부담: 금사억원정 (₩400,000,000)
3. 임대수입, 차입금 상환(원금, 이자), 수익금 활용
 - 임대수입(지하1층, 지상4층) : 연 247,500,000원
 - 원금 상환: 순수익의 40.4% /연 100,000,000원 (연 1회, 15년 완납 목표).
 - 이자상환: 순수익의 24.2% / 연 60,000,000원 (연이율 4% / 월 분할 상환)
 - ※ 매년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황금은 1년 이후 부터 줄어듦
 - 관리비, 운영비, 등: 순수익의 10.3% /연 25,400,000원
 - 목적사업 활용: 순수익의 나머지 25.1% / 연 62,100,000원

○ 의장 홍 : 제 4호 의안 장기 차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여부를 묻고 수익용 기본재산(토지)를 계속 나대지로 둘 수 없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관 제31조(수익사업)제1항 제1호 부동산 임대업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라 하다. 인천시에 실효성 확인을 위해 수익사업 개시 및 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재단측 입장에서는 장기차입을 통해 증축을 하여 임대사업을 실행해야 하는 입장임을 설명하다. 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받는 것에 동의를 구하다.

○ 이사 권 : 원안 동의하다. 법인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정관 제31조에 의한 수익사업(임대업)용 증축을 이행하려면 재정 확보를 위해 장기 차입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다.

○ 이사 함 : 재청하다.

○ 의장 홍 : 그 외 임원 여러분께 추가 의견 여부를 묻다.

○ 출석 임원 :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 의장 홍 : 동의와 재청, 추가 의견 없이 전원 찬성으로 제4호 의안 장기 차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을 선포하다.

- 제 5호 : 이사 사임 및 선임의 건

○ 의장 홍 : 제5호 의안 이사 사임 및 선임의 건에 대하여 사회자께 제안 설명 요청하다.

○ 사회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4항과 인정재단 「정관」 제18조(임원의 임기등)제1항과 관련 이사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주문하다.

- ▶ 제안사유는 함 : 이사(2024.2.22.~)께서 개인사유로 2026.6.12.자로 사임을 표함에 따라
신임 추천 이사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김 :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장애인재활을

위한 체육활동(보치아 경기)를 활성화시켜 장애인복지에 많은 기여와 국위 선양에 힘써 오신 분으로 이사 선임을 제안 설명하다.

▶ 신임 이사 (김) 이력 및 임기 / 2026.6.12.~2029.6.11.(3년)

- 의장 홍 : 이사 사임 및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견 여부를 묻고 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받는 것에 동의를 구하다.
- 이사 강 : 제시된 자료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원안 동의하다.
- 이사 권 : 재청하다.
- 의장 홍 : 그 외 임원 여러분께 추가 의견 여부를 묻다.
- 출석 임원 : 전원 이의 없이 전원 찬성하다.
- 의장 홍 : 동의와 재청, 추가 의견 없이 전원 찬성으로 제5호 의안 이사 사임 및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을 선포하다.

□ 부의 안건(본안) 심의 결과

의안 번호	안 건 명	표 결 수				심의 결과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제1호	법정관변경 승인의 건	만장일치				찬성이결
제2호	시설의 장 임면 승인의 건	만장일치				찬성이결
제3호	법인 및 산하시설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만장일치				찬성이결
제4호	장기 차입 승인의 건	만장일치				찬성이결
제5호	이사 사임 및 선임의 건	만장일치				찬성이결

□ 폐 회

- 의장 홍 : 출석 임원분께 기타 다른 의견 여부를 물으니, 없다고 답하여 폐회 동의를 구하다.
- 출석 임원 : 전원 찬성하다.
- 의장 홍 | : 의장은 이상으로써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2026년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 제2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포하다. 폐회 시간은 오후 16시 임을 확인하고 이사회를 마치다.
- 의장 홍 : 오늘 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안 전부 순조롭게 처리되어 감사의 인사를 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내딛은 2026년 6월은 인정재단 설립 24주년을 맞이하는 달로 잠시 후 설립 24주년 기념 행사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에 전원 참석해 주시길 요청하다 그동안 임원분들께서 인정재단과 함께 걸어온 길에 뿌린 귀한 밑거름이 오늘의 결실로써 눈과 귀로 마음으로 가득 느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재단이 지역복지 주치의 등불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신 모든 임원분과 그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다.

위와 같이 의결하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임원 전원은 아래와 같이 인감 날인하다.

2026 년 6 월 11 일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

대표이사	홍	(인)
상임이사	오	(인)
이 사	강	(인)
이 사	박	(인)
이 사	강	(인)
이 사	권	(인)
이 사	함	(인)
감 사	조	(인)
감 사	김	(인)

